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ĀTÑA, GUAM 96932
U.S.A.

행정지시: No.2020-16

팬데믹 준비상태 2 단계 (PCOR2) 기간 내 가능한 활동 추가

- 2020년 3월 14일부터 전 세계와 같이 괌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상태가 계속되었음.
- 괌 정부는 팬데믹 준비상태 (이하 PCOR)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중보건 관련 결정에 관한 지침을 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활동 및 괌 정부 운영에 제한을 두었음.
- 2020년 5월 8일, 괌 정부는 괌을 PCOR2 상태로 전환함.
- 괌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이하 DPHSS)와 괌 육군 주방위군 외과 자료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괌은 바이러스 진단 확대에도 뚜렷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괌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확장하여 실시하는 동시에 비필수 사업의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음.
- DPHSS와 괌 육군 주방위군 외과 및 괌 복구위원회의 결정하에 추가적으로 비필수 사업운영의 재개를 허락함.
-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Organic Act of Guam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공표함.

1.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연장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오전 00:01분을 기점으로 행정지시 2020-03에 의해 처음 공표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20년 6월 29일까지 연장됨. (행정지시 2020-03 를 통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처음 공표 후 행정지시 2020-09와 2020-11를 통해 연장하여 5월 30일 해지까지 유효하였으나 본 행정지시 공표를 통해 30일 추가 연장)

2. PCOR 2

괌은 완화된 제한 아래 PCOR2의 상태를 유지함.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ĀTÑA, GUAM 96932
U.S.A.

a.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필수적 활동을 위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타인으로부터 최소 6피트 이상 거리두기, 코로나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물건 표면 자주 소독하기, 식사나 운동 시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필수, 재택근무의 격려를 포함함. 지병이 있는 노인분들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함.

b. 모임 및 집회

'모임' 및 '집회'는 한 가구에 함께 소속되지 않은 1명 이상의 개인이 한가지 또는 다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에 해당함.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오전 8:00시부터 이와 같은 모임 및 집회는 한 가구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25명 이하로 제한함.

c. 휴교령 연장

제 10조 3항 3호 3317목에 따라 광 내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 전 학년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효 할 때까지 휴교령이 내려짐. 제 17조 6항 4호에 준수하여, 본 행정지시가 발효되는 동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행된 휴교에 따른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치부되지 않음. 관련 지방법 제 17조 6항 4호는 유예됨.

d. 광 입국 제한

제 10조 3항 3조 3333목에 따라 DPHSS에서 인증한 코로나19 비감염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모든 비거주민의 광 입국이 제한됨. 증명서는 광 입국 전 1주일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함.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비거주민 방문객은 제 10조 19항 6호 19604, 19605목에 따라 격리 조치됨. 공중보건 지침에 따라 귀국하는 광 거주민에게는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e. 공공 공원 및 해수욕장

광 내 공원 및 해수욕장은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오전 8:00시를 기점으로 재개방됨.

f. 수용인원 제한

모든 사업장, 종교시설 및 숙박업체는 공중보건 지침에 따라 수용 인원의 50% 이하로만 운영되어야 하며, 10인 이하로 이용되어야 함.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ĀTÑA, GUAM 96932
U.S.A.

g. 추가 제한 및 조건

행정지시 No. 2020-14로 발표된 제한 사항 및 PCOR2 아래 운영 가능한 사업체 및 활동은 PCOR3가 발표되기 전까지 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까지 유효함. 개인, 사업체, 종교시설 및 정부 기관은 공중보건 지침에 따라야함.

h. 집행

본 행정지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벌금 또는 사업허가 해지를 받을 수 있음. DPHSS와 국세청(DRT)은 본 행정지시를 집행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괌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

3. 괌 정부 운영

2020년 6월 1일 월요일부터 모든 괌 정부 사무실, 기관 및 부서는 공공 운영을 재개함. 모든 부서는 가능한 직원들에게 화상근무를 독려 해야함. 상사에게 화상근무를 지시 받지 않는 한, 모든 직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해야 함. 괌 정부 기관은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a. 코로나19 대응 급여 차등 지급 프로그램 만료

2020년 6월 1일 월요일을 기점으로 행정지시 2020-08에 의해 실행되었던 코로나 19 대응 급여 차등지급 프로그램 중 카테고리 3 - 10% 급여 차등지급 방안이 만료됨. 해당 프로그램의 카테고리 1, 2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은 기존 급여로 지급 받음.

4. 화상 공청회를 통한 정부 개방

제 5 조 8103, 8107, 8108, 8109, 8110, 8114, 8115 목에 따라 본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또는 그 연장 기간 동안 공청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됨. 괌 의회, 정부관계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공청회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일반 시민들이 공청 할 수 있도록 제 5 조 8113.1 목에 따라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음. 이러한 사항은 본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끝나거나 연장된 기간 동안 유지됨. 공청회에 실질적인 참석을 요구하는 모든 지방법은 유보됨.

이 외에 조건들은 다음과 같음.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ĀTÑA, GUAM 96932
U.S.A.

- a. 공청회 참석자 및 장소를 공지해야 함.
- b. 각 화상 공청회 장소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
- c. 일반 시민들은 모든 화상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음.
- d. 모든 화상공청회에서는 안건이 제시되어야 함.
- e. 최소한 한 명의 의원은 제시된 화상 공청회 장소에 실질적으로 참석해야 함.

화상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르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음.

1. 상기의 제재사항이 발효되는 동안 공공사업 관련 회의를 열고자 하는 정부기관 및 정부관계기관은 광 법무장관실 웹사이트에서 회의 내용을 먼저 제출해야 함. 이는 웹사이트에 공지하기 위함이며, 제 시간에 공지를 게시하기 위해 예정된 회의 날짜 전에 제출되어야 함.
2. 상기와 같은 공지조건과 같이, 각 단체는 전화상 또는 전자상으로 공청회 참석 권한 및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 공청 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한 최소 한 곳 이상의 장소를 공지해야 함.
3. 공개정부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회의에서 행한 조치는 제 5 조 8113.1 목을 준수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5. 압류 및 퇴거 명령 유예

행정지시 No. 2020-07 의 공표일부터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효하는 동안의 건물(임대포함), 토지 관련 압류 및 퇴거 명령이 금지됨. 현재 진행중인 압류 및 퇴거명령은 본 비상사태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동안 중단됨.

- a. 본 행정지시는 임대, 담보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개인의 지불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님.
- b. 광 주택 도시 재개발국 (The Guam Housing and Urban Renewal Authority), 광 주택 공사 (Guam Housing Corporation), 차모로 토지 신탁 관리 위원회 (CHamoru Land Trust Commission)와 같은 주택공사들은 본 비상사태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동안 주택 보조금 수혜자 및 지원자들이 해당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것임.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ĀTÑA, GUAM 96932
U.S.A.

- c. 관 국세청(DRT)은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재택 압류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낼 것임.

6. 행정 관리 규정

- a.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방해 및 지연시키는 모든 법령, 규제 및 규정의 유보.** 제 10 조 19 장 19403(a)(1)목에 의거하여 본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대응을 막거나 방해 및 지연시키는 모든 법령 규제 및 규정은 유보됨.
- b. **인사 및 조달.** 제 10 조 19 장 19505, 19803 목에 의거, 본 행정지시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모든 관 정부 기관과 관련한 채용, 초과근무 또는 구매를 허용함.
- c. **국토안보국(이하 GHS), 민방위본국(이하 OCD)을 물류관련 주요기관으로 선정.**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관련한 자원조달과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총괄을 맡게 됨. 본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물품 조달 및 구매는 관 조달법(Guam Procurement Law)의 규정을 어기지 않는 목적으로 이용 되어야함.
- d. **초과근무 허용.**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관 정부 기관 직원의 주 40 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허용됨. 민방위본국의 행정부는 관 정부기관들의 초과근무 지출 지급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초과 근무가 발생하기 전, 예산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e. **청구서.** 모든 부서 및 기관은 비상 지출 관련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감사관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해야 함. 이는 연방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의 조건임.
- f. **관 주 방위군.** 부관 참모는 자국민의 안전 및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의 운영, 과도한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방위군 및 장비 배치를 명령할 수 있음.

2020년 5월 28일 관 하갓나에서 공표

루 레온 게레로
관 주지사